

서기 2016년 9월 7일 제정시행
서기 2019년 2월 22일 개정시행
서기 2019년 9월 5일 개정시행
서기 2025년 5월 28일 개정시행

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



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



목 차

제 1 조 (목적)

제 2 조 (적용범위)

제 3 조 (행정업무 관리)

제 4 조 (선거관리위원회 경비 관리)

제 5 조 (선거관리위원회 차량지원비)

제 6 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)

제 7 조

제 8 조 (시행일)

제1조(목적)

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정관 및 선거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영규정이 조합 정관 및 선거규정과 상충될 시 정관 및 선거규정을 우선 적용 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업무 관리)

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활동기간 동안 공무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요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- ①조합 직원중 1명을 행정요원으로 조합 이사장이 파견한다.
-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 행정업무(문서작성, 회의록작성, 선거인명부작성 및 관리, 각종 인쇄물 견적, 그 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)를 담당하며 모든 문서 기록 및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. (단, 선거종료와 동시에 업무는 마감되며 모든 문서를 조합 총무과로 인계하여야 한다.)
- ④행정요원은 선거관련 법률비용(법률자문료, 소송료 등) 및 모든 물품(인쇄물, 각종 현수막, 기타물품) 집행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견적서와 조합 담당부서에 견적서를 요청하여 비교 검토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제를 특한 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들은 물품구매(견적 과정 등)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. (단, 견적금액 100만원 이상은 비교 견적을 원칙으로 한다.)
- ⑤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요원에게 특별수당 150만원을 지급한다. (단,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등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.) [2025.05.28.개정]

제4조(선거관리위원회 경비 관리)

-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관리 통장을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재권을 가진다.
-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, 간사, 위원들의 결제가 이루어진 내부기안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출결의서를 경리과에 제출하고 조합 경리과는 이를 검토 후 시행한다.
- ④조합 경리과는 입출 시행 내역을 행정요원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지출의 근거 서류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2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며, 근거 서류 없이

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책임을 진다.

제5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차량지원비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활동 차량에 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차량지원비 지원은 선거관리위원 소유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활동차량의 범위(일일 최대 4대)를 결정하여 운영한다.
- ④ 차량지원비는 1일 유류보조비 1만 5천원, 차량유지비 5천원으로 정한다.(단, 강화, 도서벽지 운행포함)
- ⑤ 위원들의 휴업신청시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차량 2대를 렌트하여 운영하도록 한다. [2019.09.05.개정]

제6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) [2019.09.05.개정]

선거관리규정 제51조(별칙) 4항에 의거 지급되지 아니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.

-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시간 종료후(오후 18시 이후) 야근시 식비를 1인당 1만원 지급한다. [2025.05.28.개정]
- ②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기간내 2회 회식을 할 수 있으며, 회식비 지출 한도는 1회 30만원 이내로 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근무는 09시부터 당일 18시까지로 하되 위원들의 차량 휴업신청시에는 1일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. 야간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30일을 일할로 계산하여 1.5배로 지급한다. [2019.09.05.개정]

제7조

그 외 모든 운영은 정관 및 선거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일)

- 1. 본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- 2. 본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3. 본 규정은 2019년 9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4. 본 규정은 2025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